

소방검사에 관한 업무 규정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소방법 제 5 조 및 동시행규칙 제 1 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소방검사) ① 소방검사(이하 "소방검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검사(건축허가동의를 위한 완공검사 포함) 소방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특수장소의 위치·구조·설비·용도·소방시설·방염처리물 및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상 필요한 사항을 검사

2. 화재·예방 검사
화재경계 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화설비 기타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한 검사

3. 화재 현장 검사
화재가 발생하면 그 발생일시, 장소, 피해자, 화재원인, 소실물의 종류 및 피해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사

4. 위험물검사(제조소등의 완공검사 포함)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등의 위치, 구조, 소방시설, 위험물의 제조·저장·취급상황 기타 화재예방상 필요한 상황을 검사

5. 지리조사
간선 또는 지선도로의 폭, 거리, 교통의 상황, 토지의 고저 및 건축물의 개황 기타 소방활동상 필요한 지리를 조사(제 1 호 및 제 4 호의 검사와 병행 실시)

6. 수리조사
소방용 수리시설의 기준에 따라 소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리시설을 조사

② 제 1 항의 소방검사(지리조사 및 수리조사는 제외)를 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 공무원으로서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예방요원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한다.

1.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술 및 기능계 자격(소방시설·위험물·전기안전·고압가스·건축) 취득자

2.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소방학과 안전관리학과 또는 이공학과를 전공한 자

3. 공업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4. 기타 소방관서장이 소방검사등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 1 항의 소방검사(건축허가동의 완공검사 및 제조소등의 허가완공검사제외)는 관할소방관 파출소장의 책임아래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 1 항의 소방검사는 별표 제 1 호 내지 제 8 호 서식에 의거 실시하고 방염처리물 검사는 별지 1의 방염처리를 검사요령에 의한다.

⑤ 하나의 특수장소에 2 이상의 소방대상물이 있거나 하나의 건축물이 2 이상의 용도로 허용되는 경우에 각 소방대상물에 대한 건축물 검사와 위험물 검사는 이를 동시에 실시한다.

⑥ 이상기상시 또는 화재예방상 필요한 때에는 검사회수에 불구하고 특별(수시) 검사대상을 지정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안전검사

시장, 백화점, 호텔, 지하가, 정부미도정공장, 고층건물, 창고 및 대량위험물(고압가스포함)의 제조·저장·취급하는 대상에 대하여 소방시설 관리상태 및 기타 화재예방상 필요한 사항을 검사(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함)

2. 순찰검사

진조, 한파, 연말연시, 구정전후, 추석명절 등 특별 경계근무시 화재 취약지구에 대한 고정대기(배치) 또는 순찰근무시 화재요인 및 소방시설 사용가능 여부를 검사(별표 제3호서식에 의함)

3. 지도검사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의 요청에 의한 검사(별표 제1호서식에 의한 검사)

⑦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소방검사(화재현장 검사제외)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제11호서식에 의거 연간 및 월간 소방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연간 및 월간소방검사 계획에 의거 검사일시 1개월전에 당해 특수장소의 관계자에게 검사일시 및 기타 참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6항의 소방검사(특별 수시검사 포함)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의한다.

1. 소방검사를 할 때에는 신분증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한다.

2. 소방검사는 점검기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3. 소방검사는 반드시 관계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4. 친절하고 부드러운 자세로 검사에 임한다.

5. 검사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간단 명료하게 그 이유와 취지를 설명한다.

6. 관계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지득한 관계자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⑩ 제1항의 소방검사(화재현장검사 제외) 결과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거 보완 명령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차명령

미비사항을 검토하여(미비내용을 분류하여) 충분한 보완 기간을 명시, 보완지시를 한다.

가. 공사가 간단한 시설(30일간)

나. 공사가 용이하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시설(60일간)

다. 난공사 시설(120일간)

2. 2차명령(1차명령 불이행시)

1차 보완기간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기간내 불이행시, 조치내용(경고)을 명시한 보완지시를 한다.

3. 조치(2차명령 불이행시)

소방법 위반대상을 평점제를 적용하여 입건 송치 또는 행정처분을 한다.

⑪ 제10항의 보완명령에 대한 이행여부를 법정검사 회수에 불구하고, 보완기한 도래일로부터 10

이내 확인하여야 한다.

⑫ 제 1 항의 소방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3 일 이내 특수건축물 관리 카드를 작성,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⑬ 자율방재 요건을 갖춘 특수장소(이하 "자율방재대상"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자율방화 점검을 제 1 항제 1 호의 건축물 검사(건축허가 등의 완공검사 제외)로 같음한다.

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표 제 13 호서식에 의거 매년 12. 10 한 익년도 소방대상물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 3 조 (자율방재 대상의 요건) 자율방재 대상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방법시행령 제 2 장 제 2 절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을 완비한 특수장소
2. 소방관 경력 3 년이상의 자, 소방설비기사, 위험물취급기능사 건축 1급기사 또는 전기안전 1급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한 특수장소

3.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확행하고 있는 특수장소

가. 방화안전 점검의 실시

(1)매월 1 회이상 외관검사(별표 제 8 호서식 참조)

(2)매분기별 1 회이상 기능검사(별표 제 7 호서식 참조)

(3)매반기별 1 회이상 정밀검사(별표 제 1 호서식 참조)

나. 점검기기의 확보

(1) 소화설비: 방수량 및 방수압축정기 1 조

(2) 경보설비: 열, 연기감지기 시험기 1 조

(3) 위험물, 가스설비: 가스검지기 1 조

(4) 전기설비: 전류, 전압 및 누전측정기 1 조

다.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1) 회 수: 연 2 회(6. 30, 12. 25 한)

(2) 제출처: 관할 소방서장

(3) 작성서식: 별표 제 1 호 참조

제 4 조 (자율방화관리 교육) ① 자율방화관리에 대한 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방화관리자로서 다음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교육대상자로 한다.

가. 소방관 경력 3 년이상의 자

나. 소방설비기사 및 위험물 기능사

다. 건축 및 전기안전 1급기사

2. 소방서장은 다음에 의하여 자율소방검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가. 교육시기: 매년 5 월중

나. 교과목

구 분	교 과 목	시 간
일반교양	○ 소화원리	3 시간
	○ 방화점검 및 방화순찰요령	
	○ 소방시설의 기준	8 시간

기술 및 실무	○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시설기준 ○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 방화관리자의 책무	10 시간
---------	---	-------

다. 교 판

소방위 이상의 간부요원

라. 평가실시

(1) 출 제

가) 내부부에서 일괄출제: 문제 은행식

나) 각 과목별로 객관식 4 지선다형 20 문제 및 주관식 단답형 5 문제

(2) 감독 및 채점

시험감독 및 채점은 소방서장이 책임 실시

(3) 채 점

각 과목별 100 점을 만점으로 하고, 매과목 40 점이상 평균 60 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② 제 1 항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실시 20 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교육기간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의 교육에 따른 서류의 제출은 다음과 같다.

1. 수강원서 1 통(시행규칙 별지 제 4 호서식)

2. 사진 3 매(3.5 cm × 4.5 cm)

3.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1 통(제 1 항 1 호)

4. 소방서장은 별표 제 9 호서식에 의하여 교육 수료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조 (자율방재대상의 통보) ① 소방서장은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방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0 일 이내 자율방재대상으로 결정하여 당해 특수장소의 관계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자율방재대상의 통보를 할 경우 별표 12 호 표지를 게시하도록 한다.

제 6 조 (지도·확인)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자율방재대상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판례서류의 작성 및 소방시설 검사 등의 지도, 확인을 연 1 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지도, 확인 결과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율방재대상 지정을 취소 조치한다.

1. 자율방화관리자의 임의변경

2. 점검요원의 미확보

3. 자율방화 안전점검의 불이행

4. 자율방화 안전점검 결과의 기록유지 불이행

5. 자율방화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미제출

6. 자체 소방시설등의 정비, 보완 불이행

7. 기타 소방법 또는 소방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법시행규칙 제 64 조의 규정에 의거 방화관리자가 다음 사항을 실시하고 있는 지를 소방검사시 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의 점검

- 가. 매분기별 1 회이상 외관점검(별표 제 8 호서식)
- 나. 매반기별 1 회이상 기능점검(별표 제 7 호서식)
- 다. 연 1 회이상 정밀검사(별표 제 1 호서식)

- 2. 점검결과와 기록유지 여부
- 3.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가. 회 수: 연 1 회

나. 제출처: 관할소방서장

다. 서 식: 별표 제 1 호서식 참조

제 7 조 (예방요원 전문교육) 예방요원에 대한 전문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전문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 1 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및 기능계 자격(소방설비, 위험물, 전기안전, 고압가스, 건축 등)

취득자

나.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소방학과, 안전관리학과 또는 이공학과를 전공한 자

다.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자

라.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예방요원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81 년이후의 합격자)

2. 예방요원의 전문교육은 다음의 요령에 의한다.

가. 방 법

(1) 시도별 순회교육 또는 소방학교 소집교육

(2) 특별교재 및 도표에 의한 전문교육

나. 시기 및 기간

(1) 매년 4, 5 월경에 실시

(2) 3 일간(21 시간 이상)

다. 교과목

(1) 소방시설의 기준 및 구조, 원리

(2)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시설기준

(3) 기타 화재예방상 필요한 전문지식

제 8 조 (예방요원 선발 및 근무배치) ① 내무부 소방국장은 다음에 의하여 예방요원의 선발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자 명단을 작성하여 해당 소방관서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1. 방 법

가. 2 년마다 1 회 실시

나. 시·도별 또는 소방서별 순회 실시

2. 주관: 내무부(문제출제, 시험감독 및 채점)

3. 문제출제

각 과목별 재판식 4 지선다형 40 문제 및 주관식 10 문제 출제(은행식 3 배수)

4. 채 점

각 과목별 100 점을 만점으로 하고 매과목별 40 점이상 평균 60 점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 1 항에 의한 합격자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평균 60 점이상고 득점자순으로 예방요원 후보자 명부를 별지 제 10 호서식에 외거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요원 후보자 중에서 건축허가동의 동의업무, 위험물 제조소 등의 허가업무, 소방검사업무(화재현장검사 제외) 등의 담당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소방검사에 관한 지침 및 지시는 폐지한다.

— 特別點檢 實施 —

점검 부서에서는 4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 점검은 재무부 장관의 위험 관리 제도 활용 촉구지시 및 내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보험금액 50억원 이상의 특수 건물과 10억원 이상의 금융기관 관련 물건(이하 금보물건이라함)의 위험 조사를 능률적으로 시행, 부보물건에 대한 위험 관리 자료를 제공하고 내무부에서 요청한 중요건축물 위탁 검사 대상 물건의 특별 점검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방재적인 효과를 증대시킴으로써 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었다.

이 점검에 소요된 인력 현황은 별표와 같다.

表 1. 특별점검실시시간별 소요인력

구 분	실 시 기 간	실 시 건 수	소 요 인 력
1차	2주(4.5 ~ 4.19)	113	80
2차	2주(6.7 ~ 6.21)	115	80
3차	12일(9.20 ~ 10.1)	60	60
계	42日	288	220

表 2. 부서별 소요인력

구 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대 전	광 주	전 주	합 계
	점 1	점 2	계							
1차	20	18	38	16	8	8	4	3	3	80
2차	20	22	42	16	8	4	4	3	3	80
3차	17	16	33	12	8	4		3		60
계	57	56	113	44	24	16	8	9	6	220